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안면도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18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변상 : 3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농신보 대손판정 불인정으로 부실채권 발생

- 1급 홍○○ 외 2명은 2018. 5. 24. 차주 염○○에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어업경영자금대출 20,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는 태안군 안면을 백사장어촌계에서 맨손어업(바지락)에 종사하는 자로 동 어업을 위한 어업경영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음. 이후, 차주는 개인사업 부진 및 건강상 이유로 어업을 포기하면서 2022. 4. 14.부터 연체되어 부실화 되었고 조합에서 2022. 7. 26. 농신보 충남지역보증센터에 대손판정 신청결과, 농신보 보증부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서상의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해야 함에도, 대출취급 후 차주는 본인 가계종합통장대출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2018. 5. 28. 동 대출금 약정을 해지하는 등 자금용도 위반 및 타채권 총당으로 농신보 관리기관으로부터 대손판정 일부 불인정 되어 조합에 총 9,733천원의 손실을 초래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서」제2조(위탁업무의 범위)
2. 「신용보증 면책기준(위탁보증용)」제1조 및 제3조